

양양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통합 홍보 마케팅

과업지시서

2025. 12.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1. 과업명 : 양양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통합 홍보 마케팅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소요예산 : ₩507,000,000(금 오억칠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양양군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가·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양양군 로컬푸드 전용 판매장이 조성중에 있으며, 양양 로컬푸드 판매장만의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컨텐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완료 이전에 상품-매장-유통-홍보-운영 주체 역량을 연계하는 통합 실행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나. 과업의 목적

- 양양 로컬푸드 브랜드와 더불어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셉부터 아이템, 실행 전략까지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 도출
- 양양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부 관광객 및 내부 거주자들의 유입을 촉진
-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하여 양양 로컬푸드 판매장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고객 인지도 제고
- 개발된 양양의 대표 상품, 델리 메뉴, 굿즈 등 지역 특화 컨텐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유통·판촉을 연계한 입체적 마케팅 추진

5. 과업의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나. 공간적 범위 : 국내외 및 양양군 전역
- 다. 내용적 범위

-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 양양군 로컬푸드 통합 홍보마케팅 운영

6. 주요 과업 내용

- 가.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 양양 로컬푸드 전략아이템 개발 및 생산지원
 - 양양군 로컬푸드를 활용한 신규 상품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팅
 -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로컬푸드 판매장 내 외식매장 전용 메뉴개발
 - 양양군로컬푸드 판매장 2층 식당 전용 메뉴 개발
 - 개발메뉴 기술이전 및 시식회 운영
- 델리형 메뉴개발 및 표준 레시피 · 매뉴얼 마련
 - 양양군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델리형 메뉴 2종 이상 개발 및 레시피 표준화, 원가 관리 가이드 마련
 - 관내 사업자 연계 기술이전 및 지속 운영방안 마련 및 지원
-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준비 및 활성화 전략 도출
 - 로컬푸드 판매장의 운영 목표 · 고객 타깃 · 운영 콘셉트 구체화
 - 판매장 개장 전 단계에서의 운영 시뮬레이션 계획 수립
- ※ 매장 인테리어 및 실시설계부터 TF로 함께 참여하여 컨셉 협의 必
- 양양 로컬푸드 판매장 VMD 기준설정 및 컨텐츠 도출

- 양양 로컬푸드 MD별 VMD 기준 설정 (카테고리별 매장구성, 상품 진열 등 고객 동선 등 고려하여 제시)

- 매장 내 안내물·POP 등 로컬푸드 매장 내 실질적 운영을 위한 컨텐츠 도출

○ 로컬푸드 연계 캐릭터·굿즈 기획 및 활용

- 로컬푸드 브랜드 정체성 반영한 캐릭터·굿즈 시안 개발
- 판매용 및 홍보용 굿즈 유형 제안 및 파일럿 제작·활용

나. 양양군 로컬푸드 통합 홍보마케팅 운영

○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

- 수도권 또는 관내 유통·행사 연계 마케팅 추진
(예: 팝업스토어, 박람회, 대형유통사 연계 ESG 개념 판매행사 등)
- 제품·메뉴·브랜드 경험 중심의 현장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제안사별로 신규 개발될 전략상품 및 양양 로컬푸드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과 접점을 통해 경험확대 및 인지도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시

○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

- 전용 스마트스토어 구축 및 핵심 온라인 채널 입점, 연계를 통한 판매&홍보 기반 마련
- 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협업 등 온라인 판촉 행사 진행

○ 브랜드 기반 IMC(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추진

- 소비자와 일관된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브랜드 키클레임 및 스토리보드 도출
- 리뷰 체험단, 언론 홍보, 커뮤니티 바이럴 등 시즌별/테마별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신규제품 및 주요 컨텐츠 촬영·상세페이지 제작·홍보 영상 등 제작
- SNS 및 공식 채널 콘텐츠 기획, 게시, 운영

1. 일반원칙

- 가. 과업지시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용역발주자 양양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함
-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 라. 최종성과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모든 과업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검사를 이행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봄

2. 자료의 적용

-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함
-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다.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관련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의 의무

-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이때 필요한 경우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연구진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 또는 공동참여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 참여 인원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또한, 용역수행자가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 (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자문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계획 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위원수당은 용역수행자 부담)
- 사. 용역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

가 부담하도록 함

- 아. 성과품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지시에 따라 작성함
- 자. 용역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납품 예정일 15일 전에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차.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카.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4. 착수계 제출

-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수시보고

(1)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수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함

(2) 중간보고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 용역을 착수한지 50%이상 지난 시점에서 2주 내로 추진단과 중간보고회 일정 협

의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

(3) 최종보고

-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단과 협의하여 최종보고회 진행

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4)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 (5)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경우

7.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음 (단, 계약금액 총액은 변경할 수 없고, 과업 운영비와 경비(여비)를 제외한 인건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진단과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1)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변화, 과업량의 증감 발생, 계획의 변경 등

(4) 기타 추진단에서 인정하는 사항

- 다.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음
-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완료 30일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나.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9. 성과품의 소유

-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10. 보안사항

-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만형사상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함
- 라.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바.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양양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III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져야 함
-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할 수 있음
-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함
-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성과품 제출

- 가. 보고서

- 최종보고서 : 10부
- USB 3개 (본 용역 수행하면서 발생된 자료 일체)